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구례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364,698	377,304	389,832	395,198	403,235	1,930,267	2.50
자 체 수 입	27,059	27,471	28,484	29,539	30,737	143,291	3.20
의 존 수 입	306,820	318,211	327,930	331,191	336,977	1,621,129	2.40
지 방 채	-	-	-	-	-	-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0,819	31,621	33,418	34,468	35,521	165,848	3.60
세 출	364,698	377,304	389,832	395,198	403,235	1,930,267	2.50
경 상 지 출	71,288	73,750	77,582	82,443	90,874	395,936	6.30
사 업 수 요	293,410	303,554	312,250	312,755	312,362	1,534,331	1.6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구례군의 2021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9	8,92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	8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2	7,954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5	884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1 지방재정 공시 참고자료」를 참조하세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및 주민의견서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 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 다음은 구례군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4,800	-	-	4,800

▸ 2021년 당초예산 기준

❖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세부내역

▸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1 지방재정 공시 참고자료」를 참조하세요

4-4.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구례군의 2021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9**	**65**	**134**	**159**	**385,540**	**302,788**	**82,752**
기획예산실	1	1	4	5	4,997	9,896	△4,899
문화관광실	1	5	8	12	50,392	22,969	27,423
총무과	1	3	6	5	15,129	13,565	1,564
재무과	1	2	8	3	43,298	42,493	804
주민복지과	1	6	12	13	48,239	44,187	4,052
평생교육과	1	7	9	9	12,808	12,066	743
종합민원과	1	3	8	5	2,905	5,343	△2,439
스포츠산업과	1	2	6	6	11,709	6,855	4,854
경제활력과	1	5	6	9	14,337	12,577	1,761
건설과	1	4	5	12	33,361	20,228	13,133
안전도시과	1	3	6	10	18,854	14,230	4,624
친환경농정과	1	4	17	18	36,077	25,619	10,459
산림소득과	1	3	6	9	9,368	8,632	736
환경교통과	1	4	6	6	16,888	15,897	991
농업기술센터	1	5	11	15	6,479	5,506	974
보건의료원	1	2	2	10	6,707	5,153	1,553
의회사무과	1	1	2	1	697	681	15
상하수도사업소	1	3	8	8	36,661	28,419	8,242
정원관리사업소	1	2	4	3	12,367	4,557	7,810
구례읍	0	0	0	0	995	903	52
문척면	0	0	0	0	357	331	26
간전면	0	0	0	0	472	408	64
토지면	0	0	0	0	496	470	26
마산면	0	0	0	0	434	379	55
광의면	0	0	0	0	490	433	56
용방면	0	0	0	0	374	383	△9
산동면	0	0	0	0	689	608	81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1 지방재정 공시 참고자료」를 참조하세요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7.21	56.44	19.56	23.28	58.49	187.32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1 지방재정 공시 참고자료」를 참조하세요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1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313,944	447	68	379	0.1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총계(A)	232,432	270,300	286,700	302,788	313,944
국외여비 총액 (B=C+D)	268	328	451	435	447
국외업무여비(C)	56	56	80	68	68
국제화여비(D)	212	272	371	367	379
비율	0.12	0.12	0.16	0.14	0.14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구례군이 2021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08,950	5,092	1.6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1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액	224,522	263,600	279,800	295,700	308,950
행사·축제경비	3,475	3,752	4,218	5,171	5,092
비율	1.55	1.42	1.51	1.75	1.65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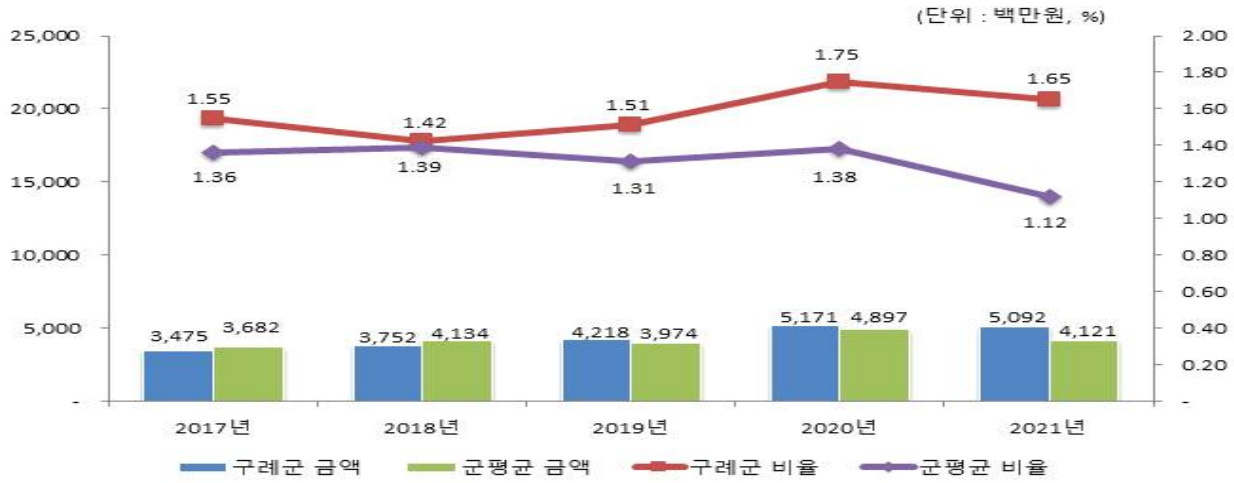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구례군의 2021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172	153	56	30	68	89.3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67	67	77	86	15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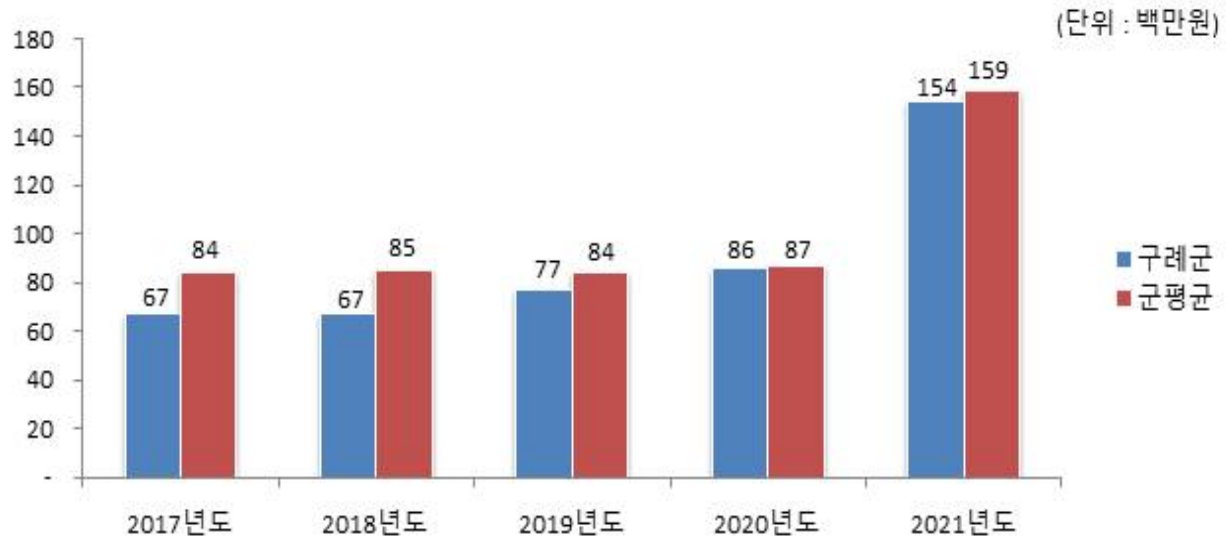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10	208	99.28%

❖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07	208	208	208	208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구례군의 2021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25	124	51	43	24	6	98.63%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99	118	124	124	124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구례군의 2021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10,128	6,288	6,288	0	62.08%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4,203	4,449	6,325	6,443	6,288
한도 내	4,203	4,449	6,325	6,443	6,288
한도 외	0	0	0	0	0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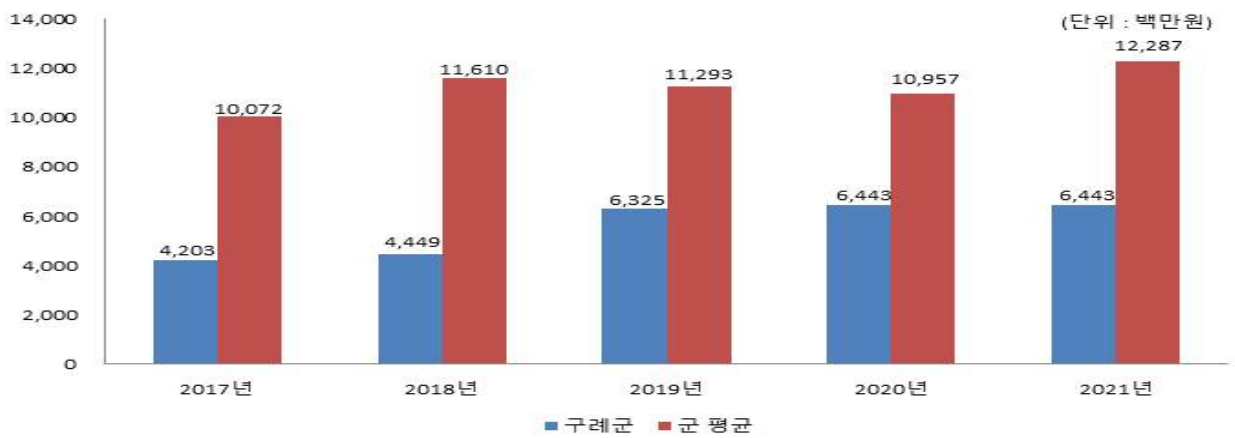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례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859	930,297	1,083
공무원 일·숙직비	962	57,72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615	872,400	1,419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총 예산편성액 = 930,297천원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083천원 * 859명 = 930,297천원
- (본청 기준)공무원 일・숙직비 총 예산편성액 = 57,720천원
  - 일・숙직비 60,000원 * 2명 * 481회 = 57,720천원
-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총 예산 편성액 : 872,400천원

・ 이장수당 300천원 * 155명 * 12월 = 558,000천원

・ 이장상여금 300천원 * 155명 * 2회 = 93,000천원

・ 이장회의 참석수당 20천원 * 155명 * 2회 * 12월 = 74,400천원

・ 이장활동비 200천원 * 155명 * 4회 = 124,000천원

・ 반장활동비 25천원 * 460명 * 2회 = 23,000천원